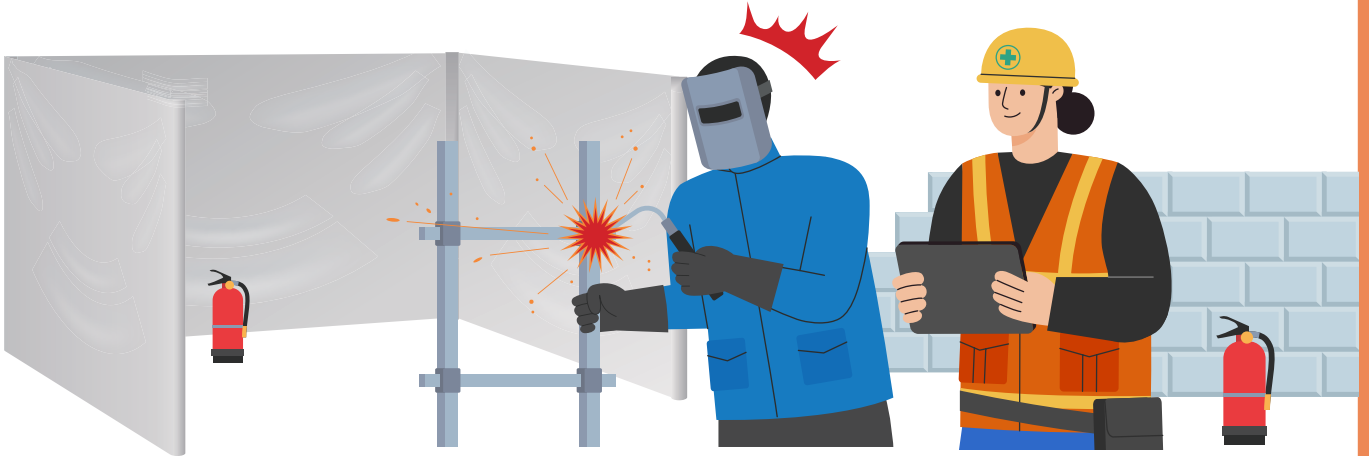


#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「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」 개정사항 알림



현행	개정안
<p>제241조(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) ① (생략) ② (생략) 4.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, 용접방화포 등 불꽃,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</p>	<p>제241조(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4.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「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」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등 불꽃,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</p>



## 용접방화포

용접·용단 시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(包) 재질로 제작한 것으로서 작업장 바닥면(수평형)혹은 벽면(수평형)에 설치



## 비산방지덮개

용접·용단 작업장 주변 가연물을 불티로부터 보호하거나 용접·용단 시 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또는 불연성 재질로 제작한 것





인증받은 용접방화포로  
바닥 및 작업장 주변 볼티 비산 방지 조치



작업장 주변 가연물은  
용접방화포 혹은 불연성 재질로 방호

## [ 용접방화포 재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]

### 1. 지원대상

-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
※ 제조업, 서비스업, 임업 등 전 업종 신청 가능(단, 건설현장은 제외)
-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-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→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'중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
### 2. 지원금액 및 절차 (한정된 예산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)

- 지원금액 : 사업장 당 최대 400만원까지
- 지원절차

